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75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김문수 · 김현정 · 박균택
신정훈 · 이광희 · 한준호
민병덕 · 김우영 · 양부남
김남근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p> <p>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⑥ (생략)</p>	<p>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u></p> <p>⑥ (현행과 같음)</p>